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심 사 보 고

2002. 12. 20.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12월 5일

○ 회부일자 : 2002년 12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2. 12. 20 :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주 준 길)

가. 제안이유

- 현재까지 은혜의료재단에서 임대사용 중이던 도유 잡종재산인 건물 및 부지를 법인의 요건해지로 해약됨에 따라 지속적인 주민의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각코저 하고,
- 보은경찰서 마로파출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교환 요청에 따라, 도유지 1필지와 국가(경찰청)소유 3필지를 등가교환하기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 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산의 처분

《 괴산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매각 》

- 소재지 :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50-2
- 규 모 : 부지 3,678㎡(1,113평), 건물 2,569㎡(777평)
지하 1층, 지상 3층(6개과 72병상)
- 대장가격 : 893백만원(부지 163, 건물 730)

《 마로파출소 이전부지 교환 》

- 교환시기 : 2002. 12월중
- 교환대상 재산
 - 경찰청 3필지 948㎡ 87백만원 ⇔ 충청북도 1필지 3,228㎡ 69백만원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재산가액 (천원)	사용상태
경찰청	충주시 용탄동	1093	도	354	23,364	내수면
	충주시 용탄동	1099-19	도	287	18,942	연구소부지
	충주시 송정동	211-6	대	307	44,515	나대지
충청북도	보은 마로 관기	603-96	잡	3,228	68,756	잡종지

※ 감정평가액으로 등가교환코자 함

○ 교환사유

- 마로파출소 이전부지확보
- 내수면연구소 부지 내 국가(경찰청)소유 재산의 도유재산화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검토한 바

이는 도유 잡종재산인 괴산 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고, 충청지방경찰청 보은 마로파출소를 신축 이전코자 이전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 괴산 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매각은

괴산 현대병원의 계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물과 부지의 대부 사용자인 은혜 의료재단의 도유재산 매수신청에 의하여 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괴산지역 주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부자인 은혜의료재단이 1997년도에 443백만원을 투자 병실 등 시설을 보강 기부 채납한 바 있으며,
동 재단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동 재산의 취득이 필수적이므로 매수요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바 공개경쟁입찰의 실익 및 수익계약(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6호)대상여부와, 매각 후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로파출소 이전부지 교환은

보은 마로파출소를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보은군 마로면 관기 소재 잡종지인 공유재산을 제공하고

충주시 용탄동 내수면연구소 내 부지 2필지와 청주시 송정동 소재 구 송정파출소 부지를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등가 교환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마로파출소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도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내수면연구소의 부지 취득과 향후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

200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증감)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4	620,121㎡	63,911,952	1	948㎡	86,821	5	621,069	63,998,773
		건물	4	30,877㎡	15,386,000				4	30,877㎡	15,386,000
		기타	1	1대	7,000,000				1	1대	7,000,000
	매 입	토지	3	616,684㎡	63,066,450				3	616,684㎡	63,066,450
		건물	4	30,877㎡	15,386,000				4	30,877㎡	15,386,000
		기타	1	1 대	7,000,000				1	1 대	7,000,000
	교 환	토지	1	3,437㎡	845,502	1	948㎡	86,821	2	4,385㎡	932,323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1	11,345㎡	846,625	2	6,906㎡	231,756	3	18,251㎡	1,078,381
		건물				1	2,569㎡	730,000	1	2,569㎡	730,000
		기타									
	매 각	토지				1	3,678㎡	163,000	1	3,678㎡	163,000
		건물				1	2,569㎡	730,000	1	2,569㎡	730,000
		기타									
	교 환	토지	1	11,345㎡	846,625	1	3,228㎡	68,756	2	14,573㎡	915,381
		건물									
		기타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2002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7-3)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교 환 대 상 수 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 상 자	비 고	
	구분	지 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취득			948	948	86,821					
	처분			3,228	3,228	68,756					
1	토지	취득	도로	충주시 용탄동 1093외 2	948	948	86,821	2002. 12	마 로 파출소 부지	국 (경찰청)	
		처분	잡종 지	보은 마로 관기 603-96	3,228	3,228	68,756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2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200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7-4)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 각 대 상 수 량	과 표 또 는 평 가 액	매각사유	매 수 회 망 자 주소,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계	토지	1 건	3,678㎡ (1,113평)	3,678㎡ (1,113평)	163,000		
	건물	1 건	2,569㎡ (777평)	2,569㎡ (777평)	730,000		
	기타						
1	토지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50-2	3,678㎡ (1,113평)	3,678㎡ (1,113평)	163,000	괴산지역 의료수혜	은 해 의료재단
	건물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50-2	2,569㎡ (777평)	2,569㎡ (777평)	730,000		
	기타						
1	토지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50-2	3,678㎡ (1,113평)	3,678㎡ (1,113평)	163,000	괴산지역 의료수혜	은 해 의료재단
	건물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50-2	2,569㎡ (777평)	2,569㎡ (777평)	730,000	"	"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①법 제7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p> <p>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기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 2 ~ 5호 생략